

1997년 2월 3일자 국세청 내부문건

유홍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

취지

유홍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
·비세를 전면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
·충격이 크므로 지역별,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
·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,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
·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도록하여 일시적 과
·화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

1자 합

과세대상 범위

■ 원칙 : 지역별 · 규모별 기준이상 업소

광역시 이상	시 지역	군 지역
35평 이상	40평 이상	45평 이상

※ 사업장 허가면적 기준이며, 광역시 및 시지역의 군부 · 읍면
지역은 군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.

■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시 고려할 사항

가. 기준규모 이상자로서 유홍주점허가를 받고 다른 영업행위하는 자

- 단란주점 등 주점영위자
 - 식품위생법상 규제규정 없으며 유홍주점으로 계속 과세

- 식품위생법상 주점이외 영업자 (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)

- 현지화인부(영업자)첨부 지방청장 승인받아 과세제외
- 시설멸실의 경우 허가판서에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등 자료통보

※ 불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

- 식품위생법상 영업이외 영업자 (수퍼, 양품점 등)

- 세무서장이 판단(공평과세협의회 부의)하여 과세제외
- 시설멸실의 경우 허가판서에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등 자료통보

나. 기준규모 미달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가 필요한 자

-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통종사자를 두거나 유통시설을

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

- 기존 과세자
-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

(예: 관광호텔내 영업자, 유명관광지 · 온천지 · 휴양지내 영업자 등)

■ 무허가자 및 단란주점 등에 대한 조치

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유통종사자를 두거나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과세

3. 향후 추진할 업무

■ 1차 정상화대상 사업자에 대한 조치

- 정상화대상 사업자 확정

- 타업종 영위자, 단란주점등으로 허가변경한 인원을 차감
- 기준규모 미달자 중 과세대상으로 판정한 자 가산

※ 과세대상 범위 기준에 의함

· 폐업자에 대한 관리

- 조사 기간중 휴·폐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

· 계속 확인하여 조사 가능 및 영업재개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

· 시설멸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가판서에 영업정지 등

· 자료통보

- 대상자에 대한 개별 신고지도실시 및 명령사항 발부

- 과세대상시기,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, 신고납부 요령등 실무적인 사항과 과세취지를 개별 지도

- 장부의 작성 및 보존, 요금영수증 발행등 사무처리규정 제71조의 명령사항 발부 및 수명서 정취

- 행정력 소요량을 감안하여 관리자 및 상위직급자가 실시

- 신고서 접수 ('97. 2월)

- '97. 1월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2월중 신고 납부상황 개별 관찰

- 최초 신고이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신고안내

- 무신고·무납부자에 대한 시정조치 ('97. 3월)

- 신규 과세대상자 중 무신고·무납부자 명단 파악

- 무신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

(법 제11조, 령 제18조)

- 원칙적으로 장부,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결정

- 장부가 없거나,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추계
결정 (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준용)

■ 1차 정상화 유보자에 대한 조치

- 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에게 "과세유예"를 알리는 안내문 발송
(별첨 "안내문" 참조)
 -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거나 영업형태를 바꿔 과세가 소는 과세대상으로 전환

과세대상범위 확대로 소비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, 각 관
서장은 소비증사 인력을 조정하여 서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방
안을 마련하여 시행 (소비 46420-1304, '96. 6. 29 참조)

3) 세금